

# 북면 종합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

## 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4. 5. 화순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4. 5. 6.

다. 상 정 일 자 : 2004. 5. 6.

(제121회 화순군의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)

## 2. 제안 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 : 재무과장 허 길 중

나. 제안사유

-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북면종합복지회관 신축 부지를 확보코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취득계획 대상토지

(단위 : m<sup>2</sup>, 천원)

구분	토 지 소 재 지			지목	취득면적	재산가액 (공시지가)	비 고
	읍면	리	지 번				
취득	북	이천	50-2외6	답	8,138	45,465	

○ 취득사유

- 영산강,섬진강 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상수원 관리지역 지정으로 인해 각종 행위 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임.
- 종합복지회관 건립부지를 확보함으로써 주민 화합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함양 및 주민복지 증진과 체력향상 도모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안영순)

- 본 안건은 주민화합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북면종합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신축부지 확보를 위해 북면 이천리 50-2번지의 6필지를 취득코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임.
- 본 변경안은 법규상,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4. 질의답변 요지

“생략”

5. 토론요지

“생략”

6. 심사결과

“원안의결”

첨 부 : 북면 종합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